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481
------------	-----

2023년 3월 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김지향 의원 외 34명

나. 제안일자 : 2023년 2월 6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316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지향 의원)

가. 제안이유

-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 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반영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는 다자녀 혜택 대상이 기존 3자녀에 머물러 있어, 지원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3자녀→2자녀)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함(안 제7조제1항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2. 14. ~ 2023. 02. 19.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 동의

-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의원 발의안대로 동의하고자 함

1) 교통정책과-2479('23.2.14.)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이 두 자녀는 30%, 세 자녀는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것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50% 할인을 적용하여 다자녀 혜택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20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²⁾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최하위였으며 '21년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산율³⁾이 더욱 감소⁴⁾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⁵⁾에 따라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자 다자녀 지원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⁶⁾하고 공항주차장의 경우 두 자녀 가구부터 다자녀 혜택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2) '합계출산율'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3)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국가통계포털 _ 시도 합계출산율 자료('20~'21년)

4) 통계청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 발표('23.2.22.)_합계출산율 0.78명

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20. 12)

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21. 09. 15)

- 서울시의 저출산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20년도 전국 합계출산율 평균(0.84명)에도 못미치는 (0.64) 전국 최하위이며, '21년도에도 0.63명으로 나타나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
- 현행 조례에서는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다둥이 행복카드'7) 소지자에 한하여 두 자녀(30%), 세 자녀(50%)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최대 감면(50%)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로 한정시키고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두 자녀 이상인 경우 발급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최대 감면 요율인 50%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임
-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8)에서는 이미 다자녀를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

7) '다둥이 행복카드'

- 감면요건(모두충족必) : ① 서울시장이 발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② 막내 연령이 만 13 이하 ③ 카드소유자 본인 확인(신분증)
- 감면 방법 : 시 주차장 조례에서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규정하여 근무자가 다둥이 행복카드 육안 확인 후 감면 적용
- 감면 구분 : 다둥이 카드에 표시된 자녀 수, 생년월일 확인

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에 대한 혜택 기준을 완화해 가고 있는 상황⁹⁾으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

- 현행 조례에 따라 다둥이 카드(두 자녀 30%, 세 자녀 50%)로 인한 총 감면액은 4억 86백만원으로 전체 주차요금 감면액 132억 8백만원의 3.66%에 불과하고 두 자녀 할인을 조정(50%)으로 인한 추가 감면액은 1억 56백만원으로 추계¹⁰⁾되어

동 조례 개정에 따라 두 자녀 감면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되더라도 세입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 개정안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취지를 고려할 때 비용 대비 사회적 효용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별첨 참조]

- 다만, '22년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전체 요금부과액은 413억 72백만원이나 각종 감면조항으로 인해 총 132억 80백만원(32.12%)의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감면조항 신설은 지양해야 할 것임

8)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 가족"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9) 경기도_2자녀 이상(할인율 50%), 울산광역시_2자녀 이상(할인율 60%) 등

10) '두 자녀 주차장 할인율 상향(30%→ 50%)에 따른 비용추계'(22년 기준)

▶ 2·3자녀 모두 50% 할인 : (① + ②) × 50% = 643백만원

① '22년 다둥이 2자녀(30%) 감면 대상자 주차장 수입금 총액(793백만원)

= 다둥이 2자녀 감면 금액(240백만원) + 감면 외 수입금(553백만원)

② '22년 다둥이 3자녀(50%) 감면 대상자 주차장 수입금 총액(492백만원)

= 다둥이 3자녀 감면 금액(247백만원) + 감면 외 수입금(245백만원)

▶ 2·3자녀 모두 50% 할인(643백만원) - 2자녀 30%·3자녀 50% 할인(487백만원) = 1억 56백만원

[별첨]

<감면사유별 감면 내역>

(‘22.12월 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비율	금액	비율
주 차 요 금 수 입	계	2,252,699	100%	28,092,482	100%
	월정기권	120,024	5.33%	13,925,750	49.57%
	시간제	2,132,675	94.67%	14,166,732	50.43%
요 금 감 면	계	1,044,283	100%	13,280,828	100%
	① 경차/저공해(50%)	623,272	59.68%	6,254,501	47.09%
	② 환승(일반 50%, 경차 80%)	156,686	15.00%	3,069,304	23.11%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80%)	191,452	18.33%	3,283,634	24.72%
	④ 다둥이(2자녀 30%, 3자녀(50%))	32,251	3.09%	486,611	3.66%
	⑤ 전기자동차(1시간면제 50%)	32,503	3.11%	123,849	0.93%
	⑥ 보훈보상대상자(50%)	217	0.02%	5,249	0.04%
	⑦ 모범납세자(100%, 1년)	199	0.02%	7,855	0.06%
	⑧ 5.18유공자(50%)	47	0.00%	1,243	0.01%
	⑨ 참전유공자(20%)	144	0.01%	893	0.01%
	⑩ 병역명문가(20%)	68	0.01%	673	0.01%
	⑪ 한부모 가정(50%)	41	0.00%	3,563	0.03%
⑫ 외교관(100%)	7,403	0.71%	43,453	0.33%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p> <p>7의2. ~ 14. (생략)</p> <p>②·③ (생략)</p>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 -----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p> <p>7의2. ~ 14.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